

섬 지역 4만 5,000여 가구에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

- 가스, 유류, 연탄, 목재 펠릿 등 4개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지난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하여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도서지역의 경우, 육지에서 도서까지의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도서민들이 육지주민보다 높은 기초생활비(약 10~20%)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운법」 개정(2018. 12.),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2019. 5.),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제정(2019. 6.) 등을 거쳐 2019년부터 지자체와 동일한 비율(50%)로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는 7개 지자체*에 국비 13.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그 중 약 9.5억 원을 우선 교부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은 전국 176개 섬에 거주하는 4만 5,000여 가구로, 이번 지원을 통해 도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연료로 많이 사용하는 유류, 가스, 연탄, 목재 펠릿을 육지와 별 차이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 2024년 지원예산 총 27억 원(국비 13.5억 원, 지방비 13.5억 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도서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의 집행여부도 철저히 점검·관리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도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책임자	과 장	도경식 (044-200-5730)
	연안해운과	담당자	사무관	윤현석 (044-200-5735)

□ 추진 목적

- (목적) 육지와 떨어진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가스, 유류 등 생활필수품에 대한 해상운송비를 일부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형태) 지자체 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대상 지자체)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 행정안전부 지원을 받아 건조된 연료운반선이 운항 중인 지자체는 제외
- (지원대상) 전국 비연륙도서 176개 약 4만5천 가구
- (지원방법) 지자체별 운송사업자*와 공급협약을 체결하고 생필품 해상운송비(선박운임비 및 현지운반비)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도선사업자 및 생활필수품 판매사업자

< (참고) '24년도 국비예산 배정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자치단체 경상보조	1,350	260	10	35	50	360	620	15

□ 관련 사진



* 울릉군 울릉읍 사동항에서 가스통을 하역하는 사진